|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2호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종합소득 취득으로 연말정산이 필요한 납세신고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두 곳 이상으로부터 종합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종합소득의 연간 소득액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6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납세자가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 중의 하나 또는 두개 이상의 소득을 취득하였고 그 종합소득의 연간 소득액에서 특별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이 6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납세연도 중에 예납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4)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필요한 납세자는 취득한 소득에 대해 익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연도 자진납세신고표>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의 임직•고용업체가 두 곳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임직•고용업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호적 소재지 또는 경상거주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종합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납세자는 소득, 특별공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기증, 세금혜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보관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종합소득 취득에 따른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고한다.  2. 경영소득 취득에 대한 납세신고  자영업자(個體工商戶),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합명기업 개인 파트너, 도급임차경영자 개인과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개인이 취득하는 경영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된다.  (1) 자영업자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및 합명기업의 파트너가 중국 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합명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  (2) 개인이 법에 따라 학원운영, 의료, 자문 및 기타 유료 용역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3) 개인이 기업•사업기관에 대한 도급경영•임대경영 및 하도급•전대로 인해 취득한 소득;  (4) 개인이 기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취득한 소득.  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경영관리 소재지 관할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개인소득세 예납신고를 한다. 소득 취득 익년 3월 31일까지 경영관리 소재지의 관할 세무기관에<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B)>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이행한다.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그 경영관리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C)>를 제출하여 연말총괄신고를 한다.  3. 과세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한 납세신고  과세소득 취득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1) 거주민 개인으로 종합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이 공고 제1조에 따라 처리한다.  (2) 비거주민 개인으로 임금•급여소득, 노무보수소득, 원고료소득, 특허권사용료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취득 익년 6월 3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 그 중 한명의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익년 6월 30일 전에 출국(임시출국 제외)하는 비거주민 개인은 출국 전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3)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을 취득하는 납세자는 소득 취득 익년 6월 30일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신고납세표(표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기관으로부터 기한부 납세 통보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신고  중국 경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취득하는 거주민 개인은 소득 취득 익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내에 중국 내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중국 내에 임직•고용업체가 없을 경우 호적 소재지 또는 중국 내 경상거주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호적 소재지와 중국 내 경상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중국 내에서 호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할 경우 중국 내 경상거주지의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한다.  5. 해외 이주로 중국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해외 이주로 중국 호적을 말소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중국 호적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호적 소재지 관할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청산하여야 한다.  (1) 호적 말소 연도에 종합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연도 자진납세신고표>를 제출하여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직전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하니한 경우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2) 호적 말소 연도에 경영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B)>를 제출하여 당년도의 경영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정산하여야 한다. 두 곳 이상으로부터 경영소득을 취득한 경우 <개인소득세 경영소득 납세신고표(표C)>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직전연도의 경영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3) 호적 말소 연도에 이자•주식배당금•이익배당금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및 우발소득을 취득한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당년도의 상기 소득에 대한 세금완납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적게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납세자는 호적 말소 전에 미납세금 또는 체납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분할납부 중인 세금이 있고 그 세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호적 말소 전에 완납하지 못한 세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5) 호적 말소에 따른 납세신고 시 특별부가공제,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처리가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 정보표>, <상업건강보험 세전공제 상황 명세표>, <개인소득세 이연형 상업양로보험 세전공제 상황 명세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국 경내에서 두 곳 이상으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비거주민 개인의 납세신고  비거주민 개인이 중국 경내에서 두 곳 이상으로부터 임금•급여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 취득 익월 15일까지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임직•고용업체 소재지의 관할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신고표(표A)>를 제출하여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7. 납세신고 방식  납세자는 원격 세무처리 시스템, 우편발송 등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다.  8. 기타 관련 사항  (1) 납세자는 자진납세신고 처리 시 세무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최초로 신고하거나 기초정보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개인소득세 기초정보표(표B)>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공고에서 언급된 관련 서류(票證單書)의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별도로 공고한다.  (2) 납세자가 납세신고 시 조세협정 혜택 적용이 필요한 경우 조세협정 혜택 적용 관련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9. 시행시간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12월 21일 |  | **国家税务总局关于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有关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62号  　　根据新修改的《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现就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有关问题公告如下：  　　一、取得综合所得需要办理汇算清缴的纳税申报  　　取得综合所得且符合下列情形之一的纳税人，应当依法办理汇算清缴：  　　（一）从两处以上取得综合所得，且综合所得年收入额减除专项扣除后的余额超过6万元；  　　（二）取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中一项或者多项所得，且综合所得年收入额减除专项扣除的余额超过6万元；  　　（三）纳税年度内预缴税额低于应纳税额；  　　（四）纳税人申请退税。  　　需要办理汇算清缴的纳税人，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3月1日至6月30日内，向任职、受雇单位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并报送《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纳税人有两处以上任职、受雇单位的，选择向其中一处任职、受雇单位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纳税人没有任职、受雇单位的，向户籍所在地或经常居住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  　　纳税人办理综合所得汇算清缴，应当准备与收入、专项扣除、专项附加扣除、依法确定的其他扣除、捐赠、享受税收优惠等相关的资料，并按规定留存备查或报送。  　　纳税人取得综合所得办理汇算清缴的具体办法，另行公告。  　　二、取得经营所得的纳税申报  　　个体工商户业主、个人独资企业投资者、合伙企业个人合伙人、承包承租经营者个人以及其他从事生产、经营活动的个人取得经营所得，包括以下情形：  　　（一）个体工商户从事生产、经营活动取得的所得，个人独资企业投资人、合伙企业的个人合伙人来源于境内注册的个人独资企业、合伙企业生产、经营的所得；  　　（二）个人依法从事办学、医疗、咨询以及其他有偿服务活动取得的所得；  　　（三）个人对企业、事业单位承包经营、承租经营以及转包、转租取得的所得；  　　（四）个人从事其他生产、经营活动取得的所得。  　　纳税人取得经营所得，按年计算个人所得税，由纳税人在月度或季度终了后15日内，向经营管理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预缴纳税申报，并报送《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A表）》。在取得所得的次年3月31日前，向经营管理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汇算清缴，并报送《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B表）》；从两处以上取得经营所得的，选择向其中一处经营管理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年度汇总申报，并报送《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C表）》。  　　三、取得应税所得，扣缴义务人未扣缴税款的纳税申报  　　纳税人取得应税所得，扣缴义务人未扣缴税款的，应当区别以下情形办理纳税申报：  　　（一）居民个人取得综合所得的，按照本公告第一条办理。  　　（二）非居民个人取得工资、薪金所得，劳务报酬所得，稿酬所得，特许权使用费所得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6月30日前，向扣缴义务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并报送《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表（A表）》。有两个以上扣缴义务人均未扣缴税款的，选择向其中一处扣缴义务人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  　　非居民个人在次年6月30日前离境（临时离境除外）的，应当在离境前办理纳税申报。  　　（三）纳税人取得利息、股息、红利所得，财产租赁所得，财产转让所得和偶然所得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6月30日前，按相关规定向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并报送《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表（A表）》。  　　税务机关通知限期缴纳的，纳税人应当按照期限缴纳税款。  　　四、取得境外所得的纳税申报  　　居民个人从中国境外取得所得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年3月1日至6月30日内，向中国境内任职、受雇单位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在中国境内没有任职、受雇单位的，向户籍所在地或中国境内经常居住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户籍所在地与中国境内经常居住地不一致的，选择其中一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在中国境内没有户籍的，向中国境内经常居住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  　　纳税人取得境外所得办理纳税申报的具体规定，另行公告。  　　五、因移居境外注销中国户籍的纳税申报  　　纳税人因移居境外注销中国户籍的，应当在申请注销中国户籍前，向户籍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进行税款清算。  　　（一）纳税人在注销户籍年度取得综合所得的，应当在注销户籍前，办理当年综合所得的汇算清缴，并报送《个人所得税年度自行纳税申报表》。尚未办理上一年度综合所得汇算清缴的，应当在办理注销户籍纳税申报时一并办理。  　　（二）纳税人在注销户籍年度取得经营所得的，应当在注销户籍前，办理当年经营所得的汇算清缴，并报送《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B表）》。从两处以上取得经营所得的，还应当一并报送《个人所得税经营所得纳税申报表（C表）》。尚未办理上一年度经营所得汇算清缴的，应当在办理注销户籍纳税申报时一并办理。  　　（三）纳税人在注销户籍当年取得利息、股息、红利所得，财产租赁所得，财产转让所得和偶然所得的，应当在注销户籍前，申报当年上述所得的完税情况，并报送《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表（A表）》。  　　（四）纳税人有未缴或者少缴税款的，应当在注销户籍前，结清欠缴或未缴的税款。纳税人存在分期缴税且未缴纳完毕的，应当在注销户籍前，结清尚未缴纳的税款。  　　（五）纳税人办理注销户籍纳税申报时，需要办理专项附加扣除、依法确定的其他扣除的，应当向税务机关报送《个人所得税专项附加扣除信息表》《商业健康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个人税收递延型商业养老保险税前扣除情况明细表》等。  　　六、非居民个人在中国境内从两处以上取得工资、薪金所得的纳税申报  　　非居民个人在中国境内从两处以上取得工资、薪金所得的，应当在取得所得的次月15日内，向其中一处任职、受雇单位所在地主管税务机关办理纳税申报，并报送《个人所得税自行纳税申报表（A表）》。  　　七、纳税申报方式  　　纳税人可以采用远程办税端、邮寄等方式申报，也可以直接到主管税务机关申报。  　　八、其他有关问题  　　（一）纳税人办理自行纳税申报时，应当一并报送税务机关要求报送的其他有关资料。首次申报或者个人基础信息发生变化的，还应报送《个人所得税基础信息表（B表）》。  　　本公告涉及的有关表证单书，由国家税务总局统一制定式样，另行公告。  　　（二）纳税人在办理纳税申报时需要享受税收协定待遇的，按照享受税收协定待遇有关办法办理。  　　九、施行时间  　　本公告自2019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8年12月21日 |